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6 선고 2014가합512805 판결 [진정명의 회복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

---

## 전 문

원고별지1 원고들 목록 기재와 같다.

**피고**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12. L

13. M

14. N

15. O

16. P

17. Q

19. R

20. S

21. T

22. U

23. V

24. W

25. X

26. Y

27. Z

28. AA

29. AB

30. AC

31. AD

34. AE

35. AF

36. AG

37. AH

38. AI

39. AJ

42. AK

43. 서울특별시 AL구

44. AM

45. AN

46. AO

47. AP

48. AQ

49. AR

50. AS

51. AT

52. AU

53. AV

54. AW

**피고(선정당사자)**33. AX

**피고(선정당사자)**41. AY

**변론 종결**2014. 9. 30.(피고 1~33, 35~49에 대하여)

2014. 11. 4. (피고 34에 대하여)

2015. 1. 16. (피고 50~54에 대하여)

**판결 선고**2015. 2. 6.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N

## 청 구 취 지

별지3 기재 표 중 '피고'란 기재 각 피고(이하 피고(선정당사자) AX, AY 및 선정자들과 나머지 피고들을 통틀어 '피고들'이라 한다)는 같은 표 '부동산의 표시'란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별지1 기재 원고들에게 별지2 기재 표 '상속지분'란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이 유

### 1. 기초 사실

#### 가. AZ 일대 토지에 대산 상환곡의 수령 중단 등

1) 서울 BA 답 2,300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비롯한 서울 AZ 일대 토지(이하 'AZ 일대 토지'라 한다)는 전답이었는데, 일제강점기에 일본 육군성에 의하여 강제로 수용되어 1942.경 내지 1943.경 국(육군성) 명의로 등기가 마쳐졌으나, 군용시설이나 군용지로 사용되지 아니하여 등기부상 지목은 전답으로 계속 남아 있었고, 망 BB(이하 '망인'이라 한다)를 비롯한 AZ 농민들에 의하여 농지로 경작되어 왔다.

2) 1949. 6. 25. 농지개혁법이 제정·공포된 후 망인을 비롯한 경작자들은 자신의 경작 부분을 농지분배 받았음을 전제로 1950.경부터 1952.경까지 일부 상환곡을 납부하기도 하였는데, 국방부가 1953. 5.경부터 AZ 일대 토지가 육군이 관리하는 국유지라고 주장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더 이상 상환곡을 수령하지 않았다.

3) 한편 대한민국은 1961.경 산업진흥 및 난민정착구제사업의 일환으로 AZ 일대 토지의 관리권을 국방부에서 재무부로 이관하고, 서울시로 하여금 간이주택 등을 지어 분양하고, BC 용지, 개인주택용지 등을 조성하도록 하였다.

#### 나. 망인 등의 민사소송 제기 및 검찰의 수사, 기소

1) 망인은 자신이 이 사건 토지를 농지분배 받았는데 대한민국이 미상환곡 정조합 84석 153홉의 수령을 거부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 64가2625호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964. 12. 26. 위 법원으로부터 '대한민국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농지상환료 정조 합계 84석 153홉을 수령함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대한민국이 서울고등법원 65나321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다시 대한민국이 대법원 66다901호로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었다.

2) 망인은 위와 같이 승소판결이 확정된 이후인 1970. 1. 15. 대한민국을 피공탁자로 하여

농지상환료 정조 합 84석 153표를 공탁하였다.

3) 망인 외에도 AZ 일대 토지를 경작하던 농민들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농지분배에 따른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유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대부분 농민들의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4) 그러자 서울지방법검찰청은 1968.경 위 민사소송에서 AZ 일대 토지에 대한 농지분배가 있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관계 공무원 등과 농민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여 관계 공무원들에 대하여는 위증 등의 혐의로, 농민들에 대하여는 (소송)사기 등의 혐의로 각 공소를 제기하였고, 최종적으로 망인의 장남인 망 BD를 포함하여 26명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 라. 선행 민사 재심판결 등

1) 대한민국은 서울지방법검찰청의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앞서 본 AZ 일대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의 확정된 민사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2) 대한민국의 항소를 기각하여 망인 승소의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위 서울고등법원 65나321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에 대하여도 서울고등법원 70사13호로 재심이 청구되었는데, 1989. 2. 8. 대한민국의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상고심인 대법원 89다카6812 사건에서 파기, 환송되었고, 파기환송심인 서울고등법원 90재나431호 사건에서 1991. 5. 29. 이 사건 판결 및 제1심 판결을 각 취소하고 망인의 소송수계인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다. 이에 대하여 망인의 소송수계인들이 대법원 91다24229호로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어 위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 마. 형사 재심판결 등

1) 위와 같이 형사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들 중 일부 또는 그 유족 등은 2006. 5. 26.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라 한다)에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신청하였고,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 사건을 'AZ 분배농지 소송사기 조작의 흑 사건'으로 명명하여 조사한 후 2008. 7. 8. 이 사건의 성격을 국가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민사소송에 개입하여 공권력을 부당하게 남용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나아가 "당시 민사소송을 제기한 농민들에게 소송사기의 책임을 묻기 어렵고, 농민들을 집단적으로 불법 연행하여 가혹행위를 가하고 위법하게 권리포기와 위증을

강요한 것을 형사소송법상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진실규명결정을 하였다.

2) 당시 유죄판결을 받았던 자 중 생존해 있는 일부 피고인들과 사망한 피고인들의 유족 등이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 등을 토대로 형사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여 대부분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는데, 망인의 장남인 BD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재노25호로 재심을 청구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2. 1. 27. 무죄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 **바. 민사 재심청구**

원고들을 비롯한 망인의 소송수계인들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2재나297호, 2012재나310호, 2012재나327호로 각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7. 3. 재심대상판결이 인정한 재심사유들이 형사 재심사건에 무죄판결이 선고·확정되어 그 근거를 상실하였으므로 재심사유가 존재하고, 재심대상판결은 이 사건 판결에 재심사유가 없음에도 대한민국의 재심청구를 받아들인 것이어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재심대상판결 중 당해 사건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대한민국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한민국이 상고하여(대법원 2013다60357) 현재 소송 계속 중에 있다.

#### **사. 이 사건 토지의 변동과정 등**

이 사건 토지는 1965. 5. 22. 인근의 총 273필지와 합병되어 BE 대 140,513평이 되었고, 같은 날 위 토지에서 BF 내지 BG의 105 필지가 분할되었으며, 각 필지에서 다시 각 필지로 분할되었다. 이 사건 토지의 현재 지번과 그 소유관계 및 각 토지 중 이 사건 토지가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한 지분은 별지3 기재와 같다.

#### **아. 상속관계**

원고들은 망인의 유족으로서 별지4 상속관계 및 상속지분표 '관계'란 기재의 배우자, 자녀, 손, 증손 관계에 있거나 그들을 상속한 사람들이다(단, 망 BD의 상속인들 사이에서는 상속지분에 관하여 위 표 지분과 별도로 대전지방법원 2012가합35112 사건에서 조정이 성립되었다).

[인정 근거]

- 피고 AW에 대하여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판단

###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자기 명의로 소유권의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진정한 소유자는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에 갈음하여 소유권에 기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다47142 판결,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다64148 판결 등 참조). 한편 농지분배를 받은 자는 그 상환을 완료하면 민법 제187조에 의하여 등기를 경유하지 않더라도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대법원 1970. 9. 22. 선고 70다122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이 사건 토지를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받아 1970. 1. 15. 대한민국을 피공탁자로 하여 농지상환료 정조 합 84석 153홉을 공탁하여 그 상환을 완료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를 상속한 원고들로서는 그 말소등기에 갈음하여 진정한 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결국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각 해당 토지 중 원고들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진정한 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은 각 적법한 소유자로부터 각 소유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래 위 각 토지를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선의·무과실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왔으므로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현재 위 토지에 관한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어 피고들(또는 그 전 소유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주장한다.

2) 등기부취득시효에 관하여 민법 제245조 제2항은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는 10년간 반드시 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앞 사람의 등기까지 아울러 그 기간동안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으면 된다(대법원 1989. 12. 26. 선고 87다카217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대지가 매매 등을

원인으로 양도되고 이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대지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할 때에 그 토지의 인도를 받아 점유를 얻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2다201410 판결 등 참조),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와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으며(민법 제199조 제1항),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민법 제197조 제1항),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을 소유자로 믿고 그 부동산을 매수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 없는 점유자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2481 판결, 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다888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7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분할 전 이 사건 토지에 해당하는 별지3 '부동산의 표시'란 기재 각 토지는 별지5 표 '소유권 변동내역' 기재1)와 같이 기재와 같이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전전 매도(혹은 상속) 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서 본인 또는 이전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다만 피고 AS, AV, AU, AT, AW는 망 BH를 상속하였으나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표 '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명의자'란 기재 각 자들은 해당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자로 등기한 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10년간 점유함으로써 위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그로 인하여 망인은 위 각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별지3 목록 '부동산의 표시'란 기재 각 해당 토지에 관한 해당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있고, 각 해당 토지에 관한 피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임을 전제로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3. 결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성수

**판사**김유진

**판사**하승우

별지